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997. 3.13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ㅇ 제 출 : 1997년 3월 6일

ㅇ 회 부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

ㅇ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

ㅇ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,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ㅇ 구 성 : 위원장 포함 20인이내, 임기4년
(위원장 :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 : 보건환경국장)

ㅇ 기 능 : 도지사의 자문기관
-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
- 기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ㅇ 회 의 -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ㅇ 의견청취 : 필요시 관련기관·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청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본 조례(안)은

-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

o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o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